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
설치 및 운용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#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제142조 개정(시행'21. 1. 1.)에 의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함에 따라 과세 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특별회계 세입, 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라.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리·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5조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지방세법」 제142조 개정(시행'21. 1. 1.)에 의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· 특정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함에 따라 과세 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세법」 제142조(시행 21. 1. 1.)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하여 규정함.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는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 - 안 제2조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5조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4. 24.~'20. 5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기존에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의 목적 구분 없이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던 것을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대해 소방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·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한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며, 발전

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사업,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